

의·학·상·식

포천의료원 이비인후과장 정영호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이란 꽃가루나 집먼지, 동물의 털, 곰팡이 균, 담배, 음식물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물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과민한 반응이 코에 주로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

다.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환자들은 과민한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증세가 결막염 형태로 눈에 나타나거나 천식 형태로 기관지 등에 나타날 수 있고 가족이나 친척 중에도 이런 증세를 갖고 있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특징적인 세가지 증상은 재채기, 맑은 물같은 콧물, 코막힘이다. 이외에 두통을 호소하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대부분에서 아침에 그 증세가 심해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꽃가루에 의한 알러지와 같이 그 계절에만 증세를 나타내는 계절성 알러지와 집먼지나 동물의 털에 의한 알러지와 같이 일년내내 증세를 나타내는 perennial 알러지가 있다.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항원)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것은 집먼지와 집먼지 속에 붙어있는 진드기이다. 따라서 먼지가 많은 불결한 환경에서 증세가 심해질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문의:포천의료원(031-539-9114)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사업을 말한다.

1.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천5백인 이상(연인원 적용은 계절사업에 한한다)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

2. 건설업 중 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백억원 이상인 사업

동법 시행규칙 제77조(보험료를 결정의 특례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와 영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결정의 특례(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를 적용하는 사업의 판단기준은 기존 보험연도의 전년도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당해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또는 계절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기간의 연간 연인원이 7천5백인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로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료율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이 법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이 되며 이를 일반요율이라 한다.

☞문의:한국중회노무법인 한술사사무소(031-877-7582~3)

한·방·상·식

한의학박사 김홍순



현대인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안고 산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느긋하고 편안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이상의 스트레스가 누적될 때 우리 몸은 이를 견디기 힘들어 구조의 신호를 보낸다. 이런 증상에는 두통, 목이 뻣뻣함, 쉽게 짜증이 나는 것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특히 두통이 가장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다.

현대인은 두통을 안고 산다

한의학 격언에 두두냉통, 복무열통(頭無冷痛, 腹無熱痛)이란 말이 있다. 머리는 차게 하면 좋고 배는 따뜻이 하면 건강하다는 말이다. 즉 머리는 더워지면 병이 된다는 뜻이다. 더워진다는 말은 머리로 열이 불린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열을 한방에서는 화(火)라고 표현하는데, 스트레스 및 고혈압 등으로 머리로 열이 불린 상태가 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즉 부분적으로 뇌의 순환하는 혈액량이 부족 및 과다 축적을 일으켜 두통을 유발하게 된다. 이를 혈관 긴장성 두통 및 신경성 두통이라 말하며 대다수의 두통이 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통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혈관성 두통은 뇌혈관 질환 및 신경성두통, 동맥염, 긴장성두통 등이다. 기질적 두통은 뇌종양, 뇌출혈, 외상 등이며 다른 곳에서 유발되는 두통은 중이염, 축농증, 경추의 이상, 근육긴장 감기 발열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문의:포천한의원(031-535-2536)

여·성·상·식

경기가정·성상담센터 이문환



Q 40대 남자입니다. 며칠 전부터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병원에도 못가보고 상담 부탁 드립니다. 왜 그런가요?

A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혈정액이라고 하는데 전혀 모르고 지나다가 자위행위, 콘돔 사용 등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중년 남성에게도 발생하며 환자는 물론 상대방에게도 심리적 충격을 주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자연히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코피가 나왔다고 바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없지만 계속해서 코피가 나온다면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액에서 피가 나왔다고 해서 즉시 치료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자연히 없어지므로 몇 차례 사정을 통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으며 피가 계속 보이면 그때 치료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혈정액이 반복될 경우 후요도부, 전

립선 또는 정낭의 염증, 종양, 결석이 원인이며 정액의 초반부에 피가 섞여 있다면 정립선의 질환일 가능성이 있고, 후반 사출액에서 피가 나올 경우에는 정낭이 이상이 있을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혈정액의 원인규명을 위해 내시경검사, 경직장 초음파검사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도 가능합니다.

정낭염이나 전립선염에 의한 경우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항생제 치료와 더불어 42~43도의 온수에 매일 1~2차례 15분~20분정도 좌욕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혈정액증이 있으면 정자의 운동성이 감소하겠지만 그렇까 큰 장애를 주지는 않으며 상대방에게 병을 옮기거나 기형아를 출생시킬 위험성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발기부전등의 성기능 장애와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문의:경기가정·성상담센터(031-542-3171)

세 무 상 담

공인회계사 송관수



Q 얼마전 라디오 뉴스에서 국제청에서 세금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보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A 국제청의 자료에 의하면 세금포인트제란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기본종세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납세자별로 세금 납부금액에 포인트를 부여해 누적 관리하고 일정 포인트 이상이 적립 되면 특정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적용대상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가능하고 평생에 걸쳐 누적관리의 의미가 있는 소득세를 대상으로 세금포인트가 부여되는데, 종합, 근로, 양도소득세등이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세는 제외됩니다. (2000년 이후 소득세 납부액부터 적용)

세금포인트는 세금납부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0.3점이 부여됩니다.

조세법적으로 처벌받은 불성실납세자는 적립된 포인트가 전부 삭감되고 납세담보제공 면제에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용포인트를 누적포인트에서 차감합니다.

적립된포인트가 100점(자납세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 제출해야하는 납세담보를 면제받는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가 1000점(자납세액 1억원)이상이 되면 세무서에 설치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민원증명 신청시 세무관에서 직접 전달해주는 택배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제도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의:공인회계사 송관수(02-404-9944)

법·률·상·담



변호사 박문우

Q 저의 누나는 집을 매수하고자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집을 너무 헐값에 팔았으며 계약해제를 요구해 와 결국 손해배상금까지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기로하고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돈을 돌려받아 보관하고 있으면서 소개료를 주어야만 보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집의 매매가 중도에 계약해제로 성사되지 않았는데도 소개료를 주어야 하는지요? 저의 누나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귀하의 누나와 집주인(매도인)간의 당초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귀하의 누나가 매도인으로부터 배상금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누나는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변호사 박문우(031-874-1652)

최고의 필링(Peeling) 전문화장품 'NEUHAUT(노이하우트)'



"노이하우트는 최고의 필링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노이하우트 천연약초필링의 특징

화학적 피부필링은 여러가지로 해로운 부분이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필링 후 피부가 아주 예민해지고 관리 후 다시 발생한 여드름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인데, 그 원인은 필링 후 재생라인이 올라오지 않아 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화학성분은 피부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2, 3회 관리시 점점 그 농도를 낮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노이하우트 천연필링은 순 천연재료를 사용하므로 화학필링과는 다르게 내성이 생기지 않으며 피부층에 남아 있지 않고 모공이나 오름으로 모두 배출되어 부작용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필링화장품도 중요하지만 민감해진 피부를 꾸준히 관리해주는 재생화장품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 노이하우트 코리아는 필링업계 최고의 재생라인과 함께 풍부한 필링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어 고객과 샵 모두가 100% 만족하는 최고의 필링을 선사해 드립니다.

■노이하우트 천연약초필링은 각종 공해와 스트레스, 많은 업무로 지쳐 있는 현대인들의 피부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산소와 같습니다. 필링을 통하여 두껍게 쌓인 각질을 제거하고 맑은 피부색을 되찾아 보세요.

프리랜서 구합니다 / 실장 휴대전화 : 017-357-8537 / 원장 휴대전화 : 016-9865-8899